

1. 개정이유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「철도사업법」 개정('19.11.26 공포) 후속조치로 점용허가 취소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, 재검토 일몰규제인 「철도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7조 및 제18조가 삭제되어,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규정 신설(제28조의2)

점용허가 취소 신청, 공무원의 조사 등 사례별로 구체적인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

나. 규제의 재검토 규정 정비(제31조의2)

철도차량의 점검·정비 관련 조문을 규제의 재검토 규정에서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1. 29. ~ 3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2를 제28조의3으로 하고,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2(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1. 법 제42조의2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3호의 경우: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것. 다만, 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명하여야 한다.

2. 법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: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 납부를 촉구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것

② 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점용허가 취소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법 제46조에 따라 원상회복이 필요하면 점용허가의 취소 통지와 함

께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.

제31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점용허가 취소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90일
신청인	성명(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전화번호	
점용(행위) 취소 개요	재산의 종류 및 구조	수량	
	점용(행위)위치	점용(행위)면적 m ²	
	점용(행위)목적		
	점용(행위)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일)	
	취소사유		

「철도사업법」 제42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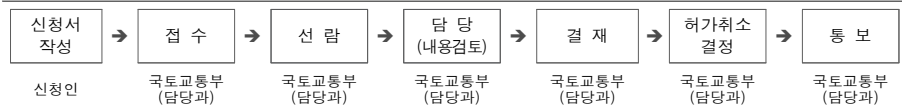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점용허가서 2. 점용허가 취소 사유서 3. 점용시설의 원상회복 계획서(법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경우는 제외)	수수료: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
유의사항	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원상회복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	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 설>	제28조의2(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. 1. 법 제42조의2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3호의 경우: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것. 다만, 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명하여야 한다. 2. 법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: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 납부를 촉구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것 ② 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점용허가 취소신청서(전자문서로

	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법 제46조에 따라 원상회복이 필요하면 점용허가의 취소 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.
제28조의2 (생략)	제28조의3 (현행 제28조의2와 같음)
제31조의2(규제의 재검토)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31조의2(규제의 재검토) ①---
1. ~ 3. (생략)	-----
4. 제17조에 따른 철도차량의 점검·정비에 대한 기록·관리 등: 2014년 1월 1일	-----
5. 제18조에 따른 점검·정비책임자의 자격: 2014년 1월 1일	-----
6. (생략)	-----
	1. ~ 3. (현행과 같음)
	<삭 제>
	<삭 제>
	6. (현행과 같음)